

모태펀드(문화, 관광, 스포츠) 2026년 5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6년도 모태펀드(문화, 관광, 스포츠) 5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개 요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 총 2,050억원 내외
투자조건 및 투자방법		· 증권시장(코넥스 시장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중소기업(국외 창업기업 포함, 이하 동일)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결성목표액 또는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 * 문화계정, 관광계정(관광기업육성 분야)에 한함 ** 조합 성격 및 공고문 주목적 투자대상 등에 따라 투자조건 및 투자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을 준용
출자 대상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 선정방법		·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인력,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 2026년 6월 5일(금), 14:00(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
조합 결성 시한		· 결성시한 : 3개월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계정	분야	출자예산 (변동가능)	결성 목표액	최대 출자비율	선정 조합수	자조합별 출자액 ^{주1)}	신청가능 조합형태
문화	수출	900	1,500	60%	3개	300	· 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관전용사모집합 투자기구
	CT(문화기술) ^{주2)}	400	668	60%	2개	200	
	청년콘텐츠	250	420	60%	1개	250	
관광	관광기업육성 ^{주2)}	230	354	65%	2개	115	
	관광M&A·세컨더리 ^{주2)}	200	308	65%	2개	100	
스포츠	스포츠AI테크	70	100	70%	1개	70	
합계		2,050	3,350	-	11개	-	

주1) 모태펀드 출자요청액을 자조합별 출자액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함

주2) 조합 1개당 결성목표액 : CT(문화기술) 분야 334억원, 관광기업육성 분야 177억원, 관광M&A·세컨더리 154억원

※ Co-GP의 경우 신청 운용사 모두 해당분야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대상
문화	수출	○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다음 ①~④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결성목표액의 60% 이상 투자 ① 해외** 매출이 발생한 문화콘텐츠 IP 소유(확보 포함)하고 수익화하는 중소기업 ②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 ③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할 예정인 중소기업 ④ ①~③에 해당하는 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중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인 프로젝트 * 투자기간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상기 조건 충족 포함(단, 조합 존속기간 만료일 또는 해당 투자 회수 완료일 중 더 이른 시일 내 증빙이 가능할 것) ** 해외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 등을 포함
	CT (문화기술)	○ 문화산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다음 ①~③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결성목표액의 60% 이상 투자 ① 신기술이 적용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또는 프로젝트 ②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3대 핵심 장르***에 적용되는 기반 기술 관련 중소기업 또는 프로젝트 ③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R&D) 콘텐츠·문화예술·저작권 분야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 * 신기술: AI, 3D프린팅,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VFX, VR, AR 등 문화 콘텐츠와 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차세대 기술 ** 프로젝트의 경우 순제작비의 15% 이상이 신기술에 사용되는 경우만 인정 *** 3대 핵심 장르 : 공연(실가상 융합), 영상(초실감 영상), 게임(초몰입 게임)
	청년 콘텐츠	○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① 청년콘텐츠 중소기업, 또는 ② 청년콘텐츠 프로젝트에 결성목표액의 60% 이상 투자 ① 청년콘텐츠 중소기업은 다음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조합 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② 청년콘텐츠 프로젝트는 다음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가. 제작사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나. 제작사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조합 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다. 영상 프로젝트(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연출감독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 * 공동제작(연출) 프로젝트의 경우 각 공동 제작사(연출감독)가 주목적 요건 충족 필요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대상
관광	관광 기업육성	○ 관광 관련 중소기업 및 프로젝트^{주1)}에 결성목표액의 65% 이상을 투자 하되,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 ① 관광 관련 창업초기기업*에 결성목표액의 5% 이상 투자 ②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에 결성목표액의 10% 이상 투자 * 창업기업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한국관광공사 시행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등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사업’ 선정 기업,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사업’ 선정 기업 (투자(납입)기간 내 충족 시 인정)
	관광 M&A· 세컨더리	○ 다음 ①, ②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결성목표액의 65% 이상 투자. 단, ①의 방식으로 최소 1건 이상 투자 ① M&A 및 Buyout 등을 위한 관광 관련 비상장 중소기업^{주2)} 인수·합병(구주(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등) 포함). 단, 다음 1)~4)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인수기업 또는 피인수기업이 관광 관련 중소기업^{주2)}이어야 함 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 등과 공동으로 1) 최대주주 지위 확보, 2) 등기임원의 과반수 선임, 3)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4) 투자한 투자가기업이 중소기업 등을 인수하여 상기 1) ~ 3)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의무로 인정 가능 ② 국내 관광 관련 비상장 중소기업^{주2)}의 기발행한 주식 등(주식관련사채 포함, 이하 ‘구주’)의 인수 - 상기 주목적 투자자산(구주)의 인수와 동시에 투자대상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등(주식관련사채 포함, 이하 ‘동시 투자 신주’)의 인수 시 주목적 투자로 인정. 단, 동시 투자 신주의 주목적 투자 인정한도는 구주 인수 금액을 한도로 함 * 단, 선정된 운용사의 고유계정 또는 운용중인 펀드에서 보유한 지분 인수는 제외
		주1) 관광 관련 중소기업 및 프로젝트 ①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②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분야 벤처기업 ④ 한국관광공사가 발굴한 관광 벤처기업 및 크라우드 펀딩 유치 성공 기업 및 프로젝트 주2) 관광 관련 중소기업 ①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②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분야 벤처기업 ④ 한국관광공사가 발굴한 관광 벤처기업 및 크라우드 펀딩 유치 성공 기업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대상
스포츠	스포츠 AI테크	○ 일정요건^{주1)}을 충족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스포츠산업 또는 스포츠산업(특수분류 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고, 다음 ①, ②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 결성목표액의 70% 이상 투자 ① 스포츠 AI 기업* 또는 스포츠 테크 기업** * AI 기술이 기존 스포츠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VFX, VR, AR,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스마트 디바이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② 전문기술인력*이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등기임원(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 *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인력 1.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수료자 포함) 2. 이공계 전공자이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창업자 또는 CTO로서 기관 투자유치 이력을 갖춘 자 3. 이공계 전공자이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창업자 또는 CTO로서 기술 관련 특허권 등록 이력을 갖춘 자 4. 국내외 기술경진대회 수상 이력 5. 그 밖에 위 사항들에 준하는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단, 주목적 투자 대상 기업의 기발행한 주식(주식관련사채 포함, 이하 '구주') 인수 시 해당 구주 투자금액을 주목적 의무투자금액(결성목표액의 70%)의 20% 한도로 주목적 투자로 인정 * 구주 매입 시 모태펀드와 사전 협의 필요
		주1) 스포츠계정 일정요건 : 아래 ①, ②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함 ① 투자 전, 스포츠 사업 영위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10% 이상인 기업 ② 투자 후, 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내 스포츠 사업 영위비율(투자일이 속한 연도~투자기간 종료 연도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기준)이 10% 이상인 기업

○ 문화계정 공통 적용 의무

- 투자건별로 원금 이상 회수한 경우, 수익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재투자 가능. 단, 재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규모는 약정총액의 150% 이내로 제한
- 프로젝트 투자 시 다음 사항 적용

1. 투자 제한

- 원금보장식 대출성 투자 금지 (원금상환약정 금지)
-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
- 주요 출자자가 제작한 프로젝트에 투자금지
-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자로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투자누계액은 조합 전체 투자누계액의 40% 미만이어야 함

2. 준수 의무 사항

- 제작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단, 선정 조합 규약 협의 시, GP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예외 조항 반영가능)
- 자조합 메인투자 시 영화·드라마 스템 인건비 별도계정 의무설치(단, 자조합 부분투자시는 권고사항)
-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 방송영상(방송영상 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
 - 공연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관련 표준계약서
- *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는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 대체 가능
- 공연예술 분야 투자시, 해당 공연의 전산화 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4. 주요 출자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
자조합의 투자의무	○ 조합 결성목표액 또는 약정총액에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투자(납입)기간	○ (문화계정, 관광계정) 4년 이내 ○ (스포츠계정) 2년 이상 4년 이내
존속기간	○ (문화계정, 관광계정) 5년 이상 ○ (스포츠계정) 5년 이상 8년 이내
관리보수	○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리보수 지급기준 < 문화계정, 관광계정 >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 < 스포츠계정 >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조합약정총액×1%)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

항 목	내 용					
기준수익률	기준수익률	분야				
	3% 이상	문화계정*, 관광계정(관광기업육성), 스포츠계정				
	5% 이상	관광계정(관광M&A·세컨더리)				
	* 문화계정의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결성 시, 기준수익률 1%p 하향 적용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	○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p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 가능,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가능 예시)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300억원	2.5%	20%	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2.3%	24%
500억원	2.3%	20%	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2.0%	26%	
수탁회사	○ 한국벤처투자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 중 수탁 회사를 선정하여 조합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 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 한국벤처투자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					
전자보고시스템	○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등 사용 의무					
기타	○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부재원 활용 펀드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으며, 세부 내용은 사전 협의 요망 ○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 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 ○ 개별조합 내 관리보수, 성과보수 요율 및 기준수익률은 단일요율을 적용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5. 인센티브

항 목	내 용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 문화계정 > ○ 운용사는 민간 재무적 출자자*에 대하여 아래의 인센티브(①,②,③)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민간 재무적 출자자 : 별도의 투자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연기금 및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자금 등)은 제외								
	<table><tr><th>구분</th><th>적용조건 및 내용</th></tr><tr><td>①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td><td>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 재무적 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 ○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 재무적 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 중 조합원총회에서 인정한 금액에 한함. 1. 청산시 조합에서 손실 발생 2. 청산시 주목적 투자에서 회수한 회수금의 합계가 주목적 투자금의 합계에 미달 *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20%)의 1/2 </td></tr><tr><td>② 초과수익 이전</td><td> ○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40% 이내에서 민간 재무적 출자자에게 지급* 가능 * 개별 민간 재무적 출자자 초과수익 지급률 : 40% x (전체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 재무적 출자자 지분) </td></tr><tr><td>③ 콜옵션</td><td> ○ 모태펀드가 민간 재무적 출자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40%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모태펀드 출자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조건> • 행사가격 = 원금 x (1 + 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2.0%)^{경과기간} • 행사기간 : 투자(납입)기간 이내 • 행사한도 :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의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단,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 재무적 출자자가 보유한 출자좌수를 한도로 함 * 전체 민간 재무적 출자자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 재무적 출자자 지분 • 배분원칙 : 콜옵션 행사 통지 이전까지 회수 완료된 투자자산은 기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원금과 손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td></tr></table>	구분	적용조건 및 내용	①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 재무적 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 ○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 재무적 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 중 조합원총회에서 인정한 금액에 한함. 1. 청산시 조합에서 손실 발생 2. 청산시 주목적 투자에서 회수한 회수금의 합계가 주목적 투자금의 합계에 미달 *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20%)의 1/2	② 초과수익 이전	○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40% 이내에서 민간 재무적 출자자에게 지급* 가능 * 개별 민간 재무적 출자자 초과수익 지급률 : 40% x (전체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 재무적 출자자 지분)	③ 콜옵션	○ 모태펀드가 민간 재무적 출자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40%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모태펀드 출자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조건> • 행사가격 = 원금 x (1 + 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2.0%)^{경과기간} • 행사기간 : 투자(납입)기간 이내 • 행사한도 :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의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단,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 재무적 출자자가 보유한 출자좌수를 한도로 함 * 전체 민간 재무적 출자자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 재무적 출자자 지분 • 배분원칙 : 콜옵션 행사 통지 이전까지 회수 완료된 투자자산은 기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원금과 손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적용조건 및 내용							
	①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 재무적 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 ○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 재무적 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 중 조합원총회에서 인정한 금액에 한함. 1. 청산시 조합에서 손실 발생 2. 청산시 주목적 투자에서 회수한 회수금의 합계가 주목적 투자금의 합계에 미달 *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20%)의 1/2							
	② 초과수익 이전	○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40% 이내에서 민간 재무적 출자자에게 지급* 가능 * 개별 민간 재무적 출자자 초과수익 지급률 : 40% x (전체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 재무적 출자자 지분)							
③ 콜옵션	○ 모태펀드가 민간 재무적 출자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40%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모태펀드 출자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조건> • 행사가격 = 원금 x (1 + 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2.0%)^{경과기간} • 행사기간 : 투자(납입)기간 이내 • 행사한도 :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출자자의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단, 행사시점 당시 해당 민간 재무적 출자자가 보유한 출자좌수를 한도로 함 * 전체 민간 재무적 출자자 출자지분 중 개별 민간 재무적 출자자 지분 • 배분원칙 : 콜옵션 행사 통지 이전까지 회수 완료된 투자자산은 기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원금과 손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적용방법은 규약협의 시 결정								

항 목	내 용												
	< 관광계정 > ○ 운용사는 아래의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아래의 민간출자자 제외대상은 해당 인센티브 부여대상에서 제외 - 별도의 주목적 투자대상을 부여한 유한책임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 정부·지자체 및 그 자금을 활용하여 출자사업을 영위하는 곳 - 정책자금 출자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table><tr><th>구분</th><th>적용조건 및 내용</th></tr><tr><td>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td><td>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 ○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의 1/2 </td></tr></table> ※ 세부 적용방법은 규약협의 시 결정	구분	적용조건 및 내용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 ○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의 1/2								
구분	적용조건 및 내용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가능 ○ 단, 수익률이 펀드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 이전한도 :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금액(모태펀드 납입출자금의 15%)의 1/2												
	○ 운용사는 다음 별도의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중복신청 가능(단,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해당되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는 다음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령할 별도 인센티브는 모태펀드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는 조합의 최종 결산 시 또는 청산 시에 지급 <문화계정> <table><tr><th>순서</th><th>적용조건</th><th>추가성과보수율</th></tr><tr><td>신주 보통주</td><td>신주보통주(상환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포함)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60% 이상일 경우</td><td>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td></tr><tr><td>고용 창출</td><td>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td><td>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td></tr><tr><td>초기 창업 기업</td><td>「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① 30% 이상 ② 50% 이상 ③ 70% 이상일 경우</td><td>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5%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③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td></tr></table>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신주 보통주	신주보통주(상환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포함)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6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	고용 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초기 창업 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① 30% 이상 ② 50% 이상 ③ 70% 이상일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5%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③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신주 보통주	신주보통주(상환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포함)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6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											
고용 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초기 창업 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① 30% 이상 ② 50% 이상 ③ 70% 이상일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5%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③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항 목	내 용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지방 투자	지방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관광계정>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 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초기 창업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방 투자	지방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3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스포츠계정>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목적 달성	펀드 결성일로부터 2년 내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10%p 이상(결성목표액의 80%) 초과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조기 투자	투자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3년 내 주목적 의무투자금액(결성 목표액의 70%)을 초과로 달성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투자목표 연계 인센티브	< 스포츠계정 >			
	○ 운용사는 아래의 투자연계 인센티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연차별 투자목표비율 >			
	구분	~ 등록 후 만 1년	~ 등록 후 만 2년	~ 등록 후 만 3년
	비율	출자약정액 총액의 40%	출자약정액 총액의 70%	출자약정액 총액의 90%
구분	내용			
기준수익률 하향	○ 기준 시점 투자목표비율을 1회 이상 달성한 조합 대상,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 0.5%p 하향 적용(단, 투자목표비율을 2회 이상 달성하더라도 기준수익률은 0.5%p 초과하여 하향 불가) * 민간출자자의 한국모태펀드에 대한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전체 민간출자자의 콜옵션 미행사시 적용 가능			
※ 세부 적용방법은 규약협의 시 결정				

6. 기타 사항

- 본 공고 내에서 계정별 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계정 간 중복지원 허용)
- 기 결성·운용 중인 펀드의 추가 증액으로 결성하는 방식(Multi-Closing)으로 신청 불가
-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조합결성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함. 또한 외국투자회사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기준통화는 원화로 함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 단, 조합의 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하 “운용인력”)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
- 모든 출자대상은 소관법령 및 기준규약에서 요구하는 투자의 방법, 투자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투자의무비율을 달리 정하는 조합으로 동법 및 시행령에 따른 투자의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 ‘4. 주요출자조건’의 성과보수와 ‘5. 인센티브’의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및 업무집행조합원 인센티브를 통해 업무집행조합원 및 민간출자자가 수령할 성과보수와 인센티브의 총계는 모태펀드 초과수익의 50%를 한도로 함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1) 1차 심사 시 가점 부여

구분	상 세 내 용	문화	관광	스포츠
LP 모집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소관법령상 출자 가능한 출자자의 출자확약서(의향서)만 인정	○	○	○
	민간 재무적 출자자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민간 재무적 출자자 : 별도의 투자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연기금 및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 단, 업무집행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은 제외 ** 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중점 우대 예정	○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수도권 이외 지역 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출자 비율	모태펀드 최대출자비율보다 10%p 이상 하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단, 결성목표액을 상향하여 제안하여야 함(모태펀드 출자 요청액 하향 불가)	○	○	
지방 투자	각 출자분야 주목적투자 대상으로 지방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정총액의 30%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 * 해당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이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인 경우 우대하지 않음	○	○	
초기 투자	각 출자분야 주목적투자 대상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창업기업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정총액의 20%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		○	
조기 결성1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성하는 경우		○	
조기 결성2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성하는 경우	○		○

※ 가점을 신청하여 우대를 받고 해당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제사항이 적용됨(세부내용 3. 제제 사항 참고)

※ 지방투자, 초기투자 가점을 신청했을 경우, 규약협시 시 해당 내용을 주목적투자 의무에 반영해야 함

2. 심의대상 제외 · 선정배제 · 선정보류 · 선정취소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1) 심의대상 제외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까지 심의대상 제외 가능

가. 제안서 양식에 위배되는 제안서

나. 소관법령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기관의 제안서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지원분야의 오입력 포함)

라.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제안서 접수마감시한을 기준으로 조합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조건이 미비되어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규약을 위반하여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 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⑤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단,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투자기업 내지 조합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책임은 그렇지 아니함
- ⑥ 신주 보통주 투자 시, 기업 경영실적 또는 후속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특별상환 청구권(put-option)을 사용하는 행위

라. 운용인력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상태로 등록이 말소된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 (단,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등록 말소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등록이 취소된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 (단,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사람 (단,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벤처캐피탈 등*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면직 또는 해임된 임직원(단,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운용 가능한 법인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2026년 3월 말 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재무제표의 인정범위

- ①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하고 날인한 재무제표 (가결산 재무제표도 인정). 단, 상장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검토(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 ②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선정배제 요건이 해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제출 가능(단, 재무제표 기준일이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인 경우만 가능)

** 재무제표 미제출 시 심의대상 제외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심의위원회(구.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 포함)'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다음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펀드의 자조합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단, 질병, 출산, 정년 등으로 인한 퇴직은 예외

라.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펀드의 자조합

마.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자격으로 출자 신청한 경우 제외

사.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 운용사가 신청한 유형이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유형의 등록된 전문인력이어야 함. 그 외 운용사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펀드 규모	최소기준 인원
300억원 이하	2명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3명
800억원 초과	4명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1 참고

- 아.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자.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 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3) 선정 보류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4) 선정 취소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라. 출자심의회에서 조합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한 운용인력의 겸직 상태를 결성일 이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겸직 상태 : 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등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사. 설립을 전제로 선정된 유한(책임)회사가 선정된 이후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운용인력 또는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아. 자격요건 충족을 전제로 선정된 외국투자회사가 조합결성시점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재 사항

- 자조합 선정 후 결성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자진 철회 등으로 조합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자진철회일 또는 1차 결성시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결성시한 연장 후 자진 철회 등으로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자진철회일 또는 연장된 결성 시한일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결성시한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선정취소로 인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운용인력은 자진철회일 또는 결성 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의 운용인력 자격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사업 참여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공고 조건에 따라 출자사업 참여 제한 면제할 수 있음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선정 조합 중 출자확약서 등(LOC, LOI)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금액이 선정 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단, 최초 결성시한 내 결성을 완료한 경우 또는 모태펀드 출자승인액의 축소로 인해 출자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출자사업 참여 제한 면제
 - 선정 조합 중 조기결성 가점을 신청하여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결성일이 해당 조기결성 확약일보다 늦어진 경우, 해당 기간만큼 관리보수 삭감 및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관리보수 삭감 세부 적용방법은 결성총회에서 정함
 - 지방투자, 초기투자 등 선정우대 항목을 선택하여 가점을 부여받았으나, 실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상기 제재사항은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펀드의 출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Ⅲ.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접수	'26. 6. 1.(월)10:00부터 '26. 6. 5.(금)14:00까지	제안서 접수(온라인)	-
선정	'26.7월(예정)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 결성 완료	-

Ⅳ. 지원 방법 및 질의응답

구분	내 용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매뉴얼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 * 온라인 접수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 https://install.kvic.or.kr
설명회	- 일시 : 2026. 5. 20.(수) 15:00 - 장소 : 한국벤처투자 지하1층 스타트업 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 신청 : 참석 희망자는 2026. 5. 19.(화) 17시까지 아래 링크로 참가 신청 (https://forms.gle/QepxEyu46s7H6zhA9) 

* 출자사업 관련 질의응답은 '26.5.26.(화)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상기일정은 특이사항 발생 시 사전 안내하고 변경될 수 있음

V.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선정결과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또는 이의에 대한 회신은 검토결과에 따라 유선 및 서면 등으로 진행

VI. 문의 방법

- 문화계정 관련 문의 : 02-2156-2168, fof@kvic.or.kr
- 관광계정 관련 문의 : 02-2156-2409, fof@kvic.or.kr
- 스포츠계정 관련 문의 : 02-2156-2067, fof@kvic.or.kr
- 온라인 접수(시스템 사용법) 관련 문의
 - 전산실(데이터센터) : 02-2156-2479, datacenter@kvic.or.kr

2026. 5. 15.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별첨 1〉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 신청 자조합의 각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약정액(신청 자조합 포함)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참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참여인력 수}) < 5,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별첨 2〉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조기결성 능력	펀드 결성기간, 결성 후 투자집행 기간 등
투자집행 역량	운용사 투자역량, 창업초기 투자역량, 투자 집중도 등
사후관리 역량	모태 자조합의 사후관리 수준 등
수익률	청산조합 수익배수, 모태 자조합 평가 수익배수 등
기타	운용사 인력 이탈률, 펀드 운용 중 중도 이직 등
가점 등	공고문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등

2차 심의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결성 능력	결성 가능성 등
운용전략	투자 전략 및 계획, 경험 수준 등
운용사	투자 실적 및 자원, 집중도 등
운용인력	인력 구성 및 실적, 책임운용 등
기타	조합 및 피투자 기업 관리 등